

수수료(제73조의8 관련)

1. 매각 수수료

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
구 분	기 준 금 액	공 매 진 행 단 계	수 수 료 율	최 저 수 수 료
가.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	해당 납부세액	공매공고 전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	0.6% 0.9% 1.2%	12만원 18만원 24만원
나.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	채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	공매공고 전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	0.6% 0.9% 1.2%	12만원 18만원 24만원
다.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	해당 매각금액	—	3.0%	30만원
라.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	해당 매수대금	—	1.2%	24만원

비고:

1.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.
2.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.
3.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2. 보전 수수료

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.